

2017년 하반기 보조금 지원 시설 연수구노인복지관 종합감사 결과보고

감사 결과

- ▶ 2017년 연수구노인복지관 종합감사는 인사·복무, 시설운영, 후원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연수구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6건, 주의 1건)와 재정상 조치(회수 500천원)를 처분 요구하고자 함.

I 감사개요

1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4(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체감사규칙」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 2017년 감사 종합계획 [감사실-8116 (2016. 12. 30.)]

2 감사대상기관 및 범위

- 감 사 반 : 감사담당 등 3명
- 감사대상 :

대상기관	감사 대상 범위	감사기간
연 수 구 노 인 복 지 관	2015. 1월 ~ 2017. 8월 추진업무 전반	2017. 9. 18. ~ 9. 22. (5일)

3 증점감사 사항

분야	감사사항
시설운영관리	보험가입 및 시설안전점검 전반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자체 운영규정 및 사회복지시설에 비치해야 할 서류
인사 및 복무	종사자의 상근 여부 및 근무상황부 관리 직원 채용, 호봉책정, 급여,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리여부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가입여부
예산회계 (후원금 포함)	시설예산편성 절차 및 심의사항 예산과목 편성 적정 및 회계장부 비치, 증빙서류 적정 수입금 수납처리 적정 여부 후원금 관리 전반(후원금 장부, 용도의 사용금지, 비지정후원금 사용 기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후원금 전용계좌 공개 여부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출장여비 집행 공사 및 물품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
주요사업	종합상담, 취미여가지원, 사회참여지원, 건강생활지원, 가족통 합지원, 지역복지협력, 노인사회활동지원, 경로당여가문화보급, 노인돌봄기본사업 등

II 감사대상기관 주요현황

1 기관현황

일반현황

(단위 : 명)

소재지	직원현황										
	계	관장	부장	과장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사무원	관리직	계약직
연수구 함박피로 194 (연수동)	37	1	1	1	3	5	1	1	1	2	21
- 시설장 : 김상유 - 시설현황 : 본관(1999. 2. 26.), 신관(2013. 1. 9.), 연면적 4,757㎡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비고
계	10,370,687	3,189,127	3,396,105	3,785,455	
시군구보조금	10,255,946	3,173,077	3,358,759	3,724,110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기타보조금	114,741	16,050	37,346	61,345	공모사업

주요사업 (13개 분야)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대상인원 (명)
상담 및 정서 생활지원사업	일반상담외 5개	복지관 회원	연중	1,020
평생교육 및 여가지원사업	평생교육P/G 일어회화 외 6개	복지관 회원	주 2회	7,018
	여가지원P/G 한문서예1 외 25개	복지관 회원	주 2회	27,957
	정보화P/G 스위시 외 11개	복지관 회원	주 2회	6,388
	선배시민양성P/G 한자지도사 외 3개	복지관 회원	주 2회	2,509
	리더자 양성P/G 외 1개	프로그램 반장	연 8회	1,068
	천수동아리	동아리 회원	연중	25,830
	성인문해교육	복지관 회원	주 2회	1,625
	문화예술교육	복지관 회원	주 1회	319
사회참여 지원사업	우리들의행복한 시간 외 7개	복지관 회원	월1회	4,551
건강생활 증진사업	물리치료 외 6개	복지관 회원	주 5회	18,421
	건강증진P/G 포켓볼1 외 19개	복지관 회원	주 2회	19,873
가족통합 지원사업	세대교류효체험장	지역주민	주 3회	2,945

사업분야	프로그램명	대상	운영횟수 및 운영시간	대상인원 (명)
재가복지 지원사업	결연후원지원	복지관 회원 지역 주민	연중	115
	재가복지지원	복지관 회원 지역 업체	연중	2,818
지역복지 협력사업	자원봉사자관리 외 3개	개인, 단체	연중	3,804
	지역네트워크	복지관 회원 지역 연계	연중	168
	후원자 관리 외 1개	복지관 회원 지역 단체	연중	311
연구조사사업	육구조사 외 6개	복지관 회원	연중	1,510
노인사회 활동지원	청소년안전지킴이 외 17개 사업단	연수구거주 65세 이상	주 2~3회 / 3시간	132,837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대화(상담) 외 3개	경로당 회원	수시	2,367
	회원역량강화 외 3개	경로당회원	주 1회 / 연 4회	44,680
	천세누리학당	경로당 회원 / 아동 · 청소년	주 1회 또는 월 1회	3,433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관리 외 2개	독거노인	주 1회 방문 주 1회 전화	62,754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은빛사랑전화방	독거노인	주 1회	11,320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사례관리 외 4개	독거노인	수시	665

2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 : 해당없음

III

감사 결과

1 총 평

- ▶ 연수구노인복지관은 1999. 2. 26. 개관하여 구 직영(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 함께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과 “신명나고 살맛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운영목표로 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상담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 감사실에서는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 시설 및 단체에 대한 감사를 정례화하여 올해 처음으로 연수구노인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위원회 운영, 물품관리,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여비지급 등에서 미비한 점이 나타났다.
- ▶ 한편, 연수노인복지관에서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국가평생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노인재능나눔활동사업(굿 멘토링) 등 13개 사업에 사업비 114,741천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2015년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2016년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점이 우수한 점으로 나타났다.
- ▶ 2017년 연수구노인복지관 종합감사는 인사·복무, 시설운영, 후원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연수구노인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해 **총 7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 6건, 주의 1건)와 재정상 조치(회수 500천원)**를 처분 요구하고자 한다.

2 지적사항 총괄

□ 처분 현황별

구 분	처분 현황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원)	신분상 조치(건)
		시정	주의	개선	회수	
연 수 구 노 인 복 지 관	7	6	1	-	회수 500,000	-

□ 업무 분야별

구 분	계	시설운영	예산회계	추진사업
연 수 구 노 인 복 지 관	7	2	3	2

3 처분요구 목록

연 번	분야	지 적 사 항	처분요구		비 고
			행정상	재정상	
	계	총 7건 (시정 6건, 주의 1건) / 회수 500,000원			
1	시설운영 (2건)	노인복지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방침 누락	주의		
2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물품수기관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미사용	시정		자료 입력
3	회계분야 (3건)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에 관한 사항 ☞ 수의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 계약보증각서, 수의계약각서 누락	시정		서류 보완
4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에 관한 사항 ☞ 청소용역비 지급 시 보험료 납부증명 미확인	시정		증명 확인
5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미확인	시정		보험 증권 제출
6	사업분야 (2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여비 과지급 및 관용차량 사용 시 감액 미적용	시정	회수 500,000원	
7		경로당여가문화사업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관련 장비 재물조사 및 후속조치 미실시	시정		재물 조사

IV

분야별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

■ 시설운영 분야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연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총칙의 제2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복지관의 장, 복지관 이용자 대표, 복지관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복지관 종사자의 대표, 연수구청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제11조(위원회의 성립)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또한, 「연수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 중 인사관리규정 제18조(구성)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인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사로 관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위원을 재위촉 및 신규위촉하면서 공식문서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¹⁾에 운영위원 위촉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담당자의 개인메일로 요청하여 위촉장을 전달하였고, 2016.11.29. 제4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시에 운영위원 총 6명중 3명이 참석하여 과반이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 ○○○ 위원의 위촉기간이 2015. 5. 6.까지임에도 재위촉 내부결재 없이 해촉될 때 까지 인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 前 사회복지과

2.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에 협력하여야 한다.
-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운영 공동지침」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한 사회복지시설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중 통합회계관리에는 회계, 예산, 세무, 인사, 급여, 자산(비품, 소모품)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시스템을 통한 물품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 예산 · 회계 분야

1.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 제4장 계약분야에서는 계약 시 계약서, 계약조건, 과업내용, 계약보증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건설업면허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장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장계, 법인인감증명서 등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회계연도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보증각서(5천만 원 이하), 수의 계약각서를 첨부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연수구노인복지관은 시설물에 대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용역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청소용역비를 계약금액의 1/12로 월 지급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1달을 기준으로 익월 7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역대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계약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부 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에서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납부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매월 청소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조회

하여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는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계약의 이행보증) 내용에 따르면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하며,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고 있다.
- 또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2014, 2017)」 제4장(계약)에서도 계약금액의 10%이상(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각종의 보증서, 국공채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2016년과 2017년 연수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 급식납품업체 전자입찰 공고문에 따르면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에 계약 이행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과 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않았으며, 계약 당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기간이 계약체결기간과 상이할 경우 보험기간만료 후에 영업 배상책임보험 재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사업분야

1.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00,000원

- 보건복지부 「2017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따르면 직제 및 보수 규정 등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노인복지관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사회복지관련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운영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016년도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지원기준」 안내(사회복지과2)-4436(2016.1.26)에 따르면 전담인력의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관용차량 이용 시 50%를 지급하며 보험료·출장여비 등은 예산범위 안에서 상호 융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現 노인장애인과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출장여비지급 시 실제 출장일수 보다 많은 출장여비를 지급하였으며, 관용차량 사용 시 50%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0%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출장여비 500,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경로당여가문화사업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201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운영지침(인천광역시)」에 따라 경로당은 지역의 노인 복지, 정보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인천시 지침에 따르면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장비 및 소모성장비 구입은 별도 장비구입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 및 여가장비와 교육용 기자재 등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참여활동 어르신이 직접 사용하는 장비 위주로 구입하여야 한다.
- 또한, 구입한 장비를 대상 경로당에 지급하거나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계속 비치할 수 있다. 장비관리를 위해 장비관리대장 및 대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후속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추진 시 2013년까지는 노인복지관에서 필요 장비를 구입·대여·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관련 부서인 구 노인장애인과(前 사회복지과)에서 구매하여 경로당으로 배부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장비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는 있으나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장비의 보관·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V

우수 사례

1

어르신 임파워먼트 멘토링 프로그램

- ❖ 2017년 3월 가장 뜨거운 이슈의 뉴스 중 하나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이 초등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고, 여고생 문제가 지역에서 더 크게 이슈가 된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더 부각되어짐.
- ❖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 위축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악화가 우려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함.

사업개요

- 어르신과 학교 밖 청소년이 1:1 매칭이 되어 문화체험, 예술활동 등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청소년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내용

사업기간	1차년 : 2016년 3월 ~ 12월 2차년 : 2017년 3월 ~ 12월
대상인원	20명 (멘토 어르신 10명, 멘티 청소년 10명) ※ 멘티는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멘토교육 및 위축식 ◯ 멘토·멘티 발대식 ◯ 멘토 자조모임 ◯ 활동평가회의
예산	1차년 : 1,500천원 (전액보조금) 2차년 : 4,000천원 (보조금 1,500, 휴먼네트워크 우수멘토링 선정 지원금 2,500천원)

□ 추진성과

○ 사업기간별 성과

구분	실적	참여대상	성 과
2016	1회당 8명 (누적 212명)	학교 밖 청소년	- ○○○센터와 업무 협약으로 지속적인 활동가능 - 은둔형 청소년의 사회참여 동기 부여
2017	1회당 10명 (누적 70명)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 변화 -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 참여자별 성과

- 어르신 :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어르신을 통해 변화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 수행
- 청소년 : 부모의 무관심으로 14살에 게임중독에 빠져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은
본 활동을 통해 사회로 나오고 싶은 동기를 찾고 검정고시에 응시하
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의 첫발을 던게 됨.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멘토 어르신 교육을 통해 멘토링 활동 영역 확대
-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지역 내 청소년의 지원
체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감소